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1/ 11/ 3 통권 1543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조세전문가· 재경실무자· 총무담당자· 모든 관리자용 **이름**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중역회의는 '어전회의'같은 소가 아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한

- 박윤종 회계사 :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 인수 합병·M&A시 주식양도세율 10%와 20% 차이

CFO· 회계실무자· 조세전문가 정보

- 국제운송용역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도 운임에 포함되어 영세를 적용됨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CMO· 마케팅 Tax consulting 선택

-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판권 취득대가는 지급무 확정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제조, 생산, 가공용, 건물, 설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의 정률법, 정액법 선택상황 >

개념 구분	정률법 적용	정액법 적용	
적용재산	건축물 이외 자산(정률법, 정액법 중 선택)	건축물과 무형자산	
상각방법	기존 미상각잔액에 내용연수별 상각율 곱함	내용연수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3년이면 83.4%)	매년 20%(3년이면 60%)	
내용연수 4년	상각률 0.528 (3년이면 89.5%)	매년 25%(3년이면 75%)	
적용하는 경우	이익률 상황	초기 이익률 높은 기업	이익률 낮은 기업
	기업규모	대기업, 첨단기술기업	중소기업, 임가공납품 등
	기업상황	기업매출, 이익 급성장기	매출, 이익, 안정화 시기
	세금계산	설비구입 초기에 세금부담 적음 말기에 세금 많음	구입 초기부터 세금부담 균형화
	세액감면	이익편차로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움	세금 균형으로 세액감면적용 최대화
	설비투자주기	매년 계속설비구입투자	설비투자가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43호 / 주간 44호

2021. 11. 3.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제조·생산·가공·건물·설비·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상황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 인수·합병·M&A시 주식양도세율 10%와 20% 차이	2
C E O 에 세 이	중역회의는 '어전회의'같은 쇼가 아니다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외국인 사업소득 신고 문과 일시적 2주택 비교세 문의 - 주류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배송비 문의 건 - 업무용 자동차 손금산입 문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국제운송용역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도 운임에 포함되어 영세를 적용 됨	8
매 일 절 세 제 무 요 점	- 개정 지방세법 시행 시 취득세 변화 - 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주요 조세특례 항목 및 규모	10 11
직 장 인 Survival	독서습관 만들기 10가지 방법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용자받은 성공불용자의 용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국조-3324, 2021.03.02) -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기준법령법인-172, 2021.02.03)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위드 코로나'해도 코로나 세정지원은 계속	15
마 케 팅 Tax consulting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판권 취득대가는 지급의무 확정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13
세 무 정 보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16 17 32
회 계 정 보	-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4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 인수 · 합병 · M&A시 주식양도세율 10%와 20% 차이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범위)와 제104조(주식양도소득세율)에서 중소기업의 소액 주주 세율은 10%, 비중소기업은 20%, 대주주는 20%(3억원까지), 25%(3억원 초과), 30%(1년 미만 보유)로 차등있게 규정함.
2. 세법상 중소기업범위에 대해 10년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종 · 규모 등을 상세히 열거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2016년까지는 167조의8 규정임)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로 위임규정함.
3.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에 열거된 업종이나 규모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액주주라도 주식 · 지분양도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없고, 20% 이상 적용해야 함.
4. 중소기업 가능 사업(10% 가능) : 농업 등 1차산업, 제조 · 광 · 건설 · 전기 · 수도 · 정보통신 등, 도 · 소매, 음식, 숙박, 인적 · 기술서비스업, 금융 · 보험 · 부동산업, 임대업, 의료보건업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5. 중소기업 해당 안됨(10% 불가능) : 전문직 서비스업(법무 · 회계 · 세금), 부동산 중개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중역회의는 ‘어전회의’같은 쇼가 아니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사소한 일 같지만 직장생활에서 점심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일과중의 하나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식사를 즐기는 것은 영양공급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식사시간을 잘 엔조이하고 나면 식후 업무의 효율도 오르게 마련이다.

사장에서 말단사원까지 식당에 도착한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러면서 서로 뜸했던 동료들끼리 만나게 된다. 자연스레 안부와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차례가 오면 식판과 수저 등을 들고 셀프서비스로 배식코너에서 음식을 받은 후 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식후 식판 등을 처리 장소로 마무리 짓는다. 모두 스스럼없이 식사시간을 매우 즐겁게 엔조이하고들 있는 것 같다. 먹는 곳까지 와서 제습화한 환경을 만든다면 그것은 정서적 공해다. 모처럼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격의없이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귀한 기회를 갖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음식을 차려서 갖다 대령하기를 기다리는 특권계급이 없어서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레 대부분의 중역끼리는 모여 앉아 식사하게 되어 있다. 아침 회의때 미진했던 것, 자료는 미완성이라도 협조 부서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으면 좋을 일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부담 없이 식사를 즐기며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아닌가.

간과 장소와 격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잘 소화하고 활용하여 스피드 경영을 이루어야 한다. 옆에 많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 뒤편이 구린데가 있는 의사결정이나 경영전략 회의라면 보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경영은 모든 임직원이 참여 못할 사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으로 거의 경영 안팎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솔루션을 도출하는 게 현대 경영이다. 그래서 칸막이도 없고 격의 없는 장소에서 간담회 같은 중역회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이 배가 차면 유해진다. 쓸데없이 참여한 논쟁거리도 슬며시 극복되고 야박하지 않은 덕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고 한다. 그러니 식당의 중역회의는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재벌 등 대기업의 회의는 어떤가? '어전회의'라 부르는 그대로 '황제'를 모신 경직적인 회의다. TV에서 보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과장일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어라"는 한국의 대표적 재벌 총수는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면서 세계화에 열을 올렸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임원들을 떼지어 모아 유럽에 가서 회의를 했다한다. 마치 그것이 세계화인 것처럼. 마침 주력 계열사의 반도체 수익이 좋았던 탓도 있었다. 또한 정권적 차원의 업적으로 둔갑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벤트 같은 쇼가 필요했으리라. 그것에 부응한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말도 있었다. 그 후 반도체 국제 가격은 곤두박질도 치고 또 오르락 거리면서 희비쌍곡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이제 벽돌 짝어 회의를 하는데 쓰리는 이익금인지 반성해 볼일이다. 그 재벌총수가 느닷없이 주창하던 74제(오전7시 출근 오후4시 퇴근)의 현황은 요즘 어떤가? 오너 취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의당 어전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진출했을 자동차 계열사의 운명은 어떤가? 최근 그 그룹을 퇴임한 대표적 전문경영인이 자동차사업을 주장해서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홍보전까지 사 내외로 하는 이유는... 과연 그것으로 총수오너의 취향에 따른 독단과 잘못이 감추어질까?

애시당초부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어라” 는 잠꼬대에 “너나 바꾸어라” 는 국민의 질타를 그가 듣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외국인 사업소득 신고 문의

Q 국내거주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프리랜서가 있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분이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을 경우(베트남 국적 미국 신분) 비용 지급식 소득신고 유형과 세금신고 등 방법 문의드립니다.

A 국내세법은 외국인/내국인이라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으로 국내과세 및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가 불명확한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므로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류카드

Q 주류회사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카드로 결제를 하고있는데요.

새롭게 거래를 한 업체가 소규모 양조장이어서 주류 단말기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류카드로 대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구매금액에 맞추어 발행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A 주류 구매후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나, 주류카드 가맹점 등으로 가입하지 않고 주류카드 발행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거래할 예정이라면 거래 상대방에게도 주류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주류카드 제도를 시행하는데 주류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 받을 수 있는데, 거래 자체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면 판매자는 물론 구입자인 귀사도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배송비 문의 건

- Q** 금번 매입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한 장 발행되었는데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매입 업체에서 공급가액 10,5000원 (물품 100,000원, 배송비 5,000원) / 부가세 10,000원 짜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였습니다. 물품에 대한 부가세만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발행하고,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물품과 배송비에 대한 공급가액을 모두 계산하여 부가세 10,500원으로 새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배송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귀사의 거래처는 물품(재화)만 공급하였으므로 물품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배송비를 거래처가 먼저 지급후 귀사에게 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업무용 자동차 손금산입 문의

- Q** 1. 고객사 소유의 차량을 대여 받아 현재 사용기간중 자사 이름으로 업무용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모든 사람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2. 고객사 소유의 차량을 대여 받아 test를 위하여 자사에서 2주정도 이용하였고, 100% 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용중 보험은 자사이름으로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는 업무용 승용차로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가요?
- A** 1. 귀사 명의의 차량이 아니지만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귀사명의로 보험가입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귀사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실제 귀사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간의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운송용역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도 운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수출입 기업의 대다수가 항공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는 해상운송이 항공운송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비용에 있어서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출입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국제운송을 통해 수출 및 수입을 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국제운송업이나 국제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한다.

이렇게 수출에 따른 물품의 운송을 위해 국제운송을 영위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 물품운송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절한 지출증빙은 무엇이며, 부가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을 부가세 영세율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입함에 있어 국제운송업자에게 물품의 국제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운임료(Freight)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부두사용료 등은 운임료에 포함한다

국제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운임료와는 별도로 표시되는 부두사용료(Wharfage), 터미널비용(Terminal Charge), 서류작성비(Documentation Fee) 등의 부대비용의 경우는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보통 대부분의 수출입 업체가 하나의 외주거래처에게 물품의 국제운송과 그에 따른 대부분의 절차를 위탁하고 있는 현실은 감안할 때, 운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사용료, 터미널

비용, 서류작성비 등의 부대비용도 국제운임료에 포함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즉,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하나의 업체에 위탁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금, 요금, 수수료 및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전체의 지급액을 하나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다. ·

하지만 국제운송업자가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와 부두사용료를 국제운송용역의 대가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와 부두사용료 등의 금액은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부가-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수출입 부대비용 관련 용어설명

① 운임 Freight

운송서비스의 보수(대사)로서 지급되는 요금으로서 선불(Freight Prepaid)되는 경우와 후불(Freight Collect)되는 경우가 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해상운임의 후불은 FOB나 FAS의 경우이고 해상운임의 선불은 CIF, CFR 등의 선적지조건의 경우이다.

② 부두사용료 Wharfage

부도업자 또는 부두소유자가 부두나 가치장의 사용료로서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터미널 비용 Terminal Charge

항만에서의 하역화물의 handling비용을 말한다. 원래 선박회사는 본선 Derrick을 떠난 화물에 대한 모든 비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 요금이 선박회사에 청구되므로 하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OCP화물에서는 트럭, 철도, 선박회사가 항만비용을 부담한다.

④ 문서작성비 Documentation Fee

서류비용으로 B/L발행비용이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시 취득세 변화

	법 개정 전	개정 후
취득세 과표기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	시가인정액
과표금액	5억원	8억원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0%	
취득세	6200만원	9920만원

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 부담 완화 수준

소득구분	유류세 인하 전	유류세 인하 후	변동
1분위	10만2000	8만7000	1만5000
2분위	12만9000	11만	1만9000
9분위	87만7000	74만5000	13만2000
10분위	105만7000	89만8000	15만9000



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주요 조세특례 항목 및 규모

항목	2017	2018	2019	2020	2021
고용 증대	-	2억	7317억	1조2812억	1조8089억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671억	909억	1796억	3077억	3651억
정규직 전환	25억	143억	266억	305억	285억
근로소득증대	94억	133억	124억	109억	114억
경력단절 여성고용 등	1500만	4000만	2억5000만	11억	20억



최근 5년(2020년까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

구분	법인 수	과세대상 소득	환류금액			미환류 소득	산출세액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상생협력)		
2016년	3,425	746,111	1,075,417	56,447	438,385	61,313	533
2017년	3,845	804,578	1,041,016	61,326	562,279	96,315	4,279
2018년	3,875	1,036,317	1,260,534	80,476	344,050	132,339	7,191
2019년	3,879	258,213	1,050,520	80,087	11,519	76,161	8,544
2020년	4,382	271,388	986,775	93,594	17,828	72,056	10,658



독서습관 만들기 10가지 방법

1. '읽어야 할 책' 말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
책을 읽다 보면 보고 싶은 책이 또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독서 욕구를 쫓다 보면 어느 순간 '책벌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2. 독서 중독을 피하라.
책 중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이 빈약해지는 책들도 있다. 판타지, 무협지 등이 그렇다. 뻔한 줄거리로 익숙해지다 보면 깊이 있는 책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3. 도서관, 서점과 친해져라.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이 보고 싶어진다. 대형 서점에 가서 한나절을 보내 보라. 세상에 재미있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4. '예쁘고 색시한' 책을 골라라.
디자인은 책을 고를 때 무척 중요한 요소다.
활자가 시원시원하고 깔끔하게 편집된 책은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5. 자기 체급에 맞는 책을 읽어라.
책을 고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기 수준에 맞게 짧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책을 고르자.
6. 책을 읽은 뒤에는 꼭 기록을 남겨라.
느낌이나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독후감'이 아니어도 좋다.
책 앞뒷면 속지에 끼적거리려 놓은 감상이 나중에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
7. 긴 호흡의 분석 기사나 칼럼과 친해져라.
인터넷 신문에서 긴 호흡의 분석 기사나 칼럼을 하루 한 편 정도씩 읽어 보자. 대개 논쟁 글이라 쉽게 몰두할 수 있어 어느덧 독서 지구력이 상당히 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8. 독서가 전천후 활동이 되게 하라.
독서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하루 15분씩이면 웬만한 책은 일주일 안에 다 뿔 수 있다.
9. 책을 가혹하게 다뤄라.
과감하게 밀줄치고 메모하고 접으며 읽어라.
책에 자신이 머리 쓴 흔적을 많이 남길수록 독서도 치열해진다.
10. 책 많이 보는 친구들과 어울려라.
밤은 여럿이 먹어야 맛있는 법이다. 독서도 그렇다.

최신 판례 예규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용자받은 성공불용자의 용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국조-3324, 2021.03.02

질 의

-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A국 소재 해외자회사(이하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함
-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용자 조건으로 용자받음
 - 이후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해 A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 처분손실 등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해당 성공불용자금의 감면승인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을 얻음

질의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성공불용자의 용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용자받은 성공불용자의 용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

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판권 취득대가는 지급의무 확정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247, 2021.01.22

질 의

- 법인이 국내외 영화제작자 또는 공연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판권(공동제작 영화판권 및 라이선스 영화판권, 공동제작 공연판권) 취득대가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기준법령법인-172, 2021.02.03

■ 질 의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액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기준법령법인-144, 2021.03.09

■ 질 의

- (질의1)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1안) 손금산입 할 수 없음
- (2안)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질의2)질의1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안)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 가능
- (2안)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 회 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위드 코로나'해도 코로나 세정지원은 계속

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제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 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불과...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부자감세"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천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흉남기 부총리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용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만으로도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먼저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휘발유 내달부터 1ℓ당 164원↓... 당정, 유류세 20% 파격인하 합의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분석했다.

6개월간 유류세 지원에 따른 재원은 2조50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 2%에서 0%로 내린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해 유류세 인하 후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등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 물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외 공급망 다각화나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국세청, 2021. 10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9.1.부터 '21.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1~4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구분	확정신고	6월 결산	7월 결산	8월 결산	9월 결산
	중간예납	1월 결산	2월 결산	3월 결산	4월 결산
당초 납부기한		'21. 9. 30.	'21. 11. 1.	'21. 11. 30.	'21. 12. 31.
연장된 납부기한		'21. 12. 31.	'22. 2. 3.	'22. 2. 28.	'22. 3. 31.

※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 국세청, 2021. 10

- ◆ (결과 개요)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0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인원은 16.6% (445명)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5% (0.9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신고인원 증가이유)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 5억 원)와 ' 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효과*이외에,
 - *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이 됨
 - 납세자의 자진신고 인식 확산과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적중률 제고의 결과로 보입니다.
 - (신고금액 감소이유) 저금리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신고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 (향후 계획) 앞으로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90%까지 늘었고, 올해 감경 사유도 새로 추가되었으니, 계좌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1. 결과 개요

-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130명, 신고금액은 59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16.6%(445명)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5%(0.9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4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인원은 26.3% 증가, 금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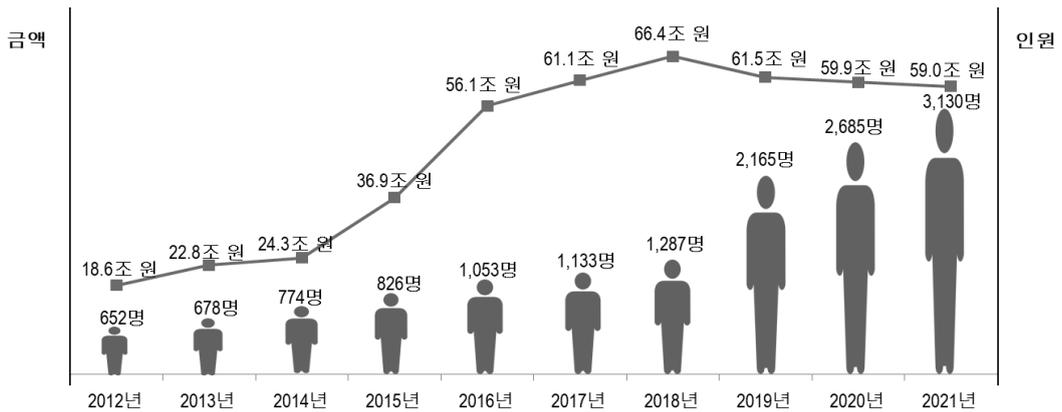
- 17.5% 증가하였으며,
 -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 6천억 원을 신고하여, 법인 수는 6.4% 감소, 금액은 4.4%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명, 개, 조 원, 전년대비 증가율)

구 분	2021년			2020년	
	인 원	신고 계좌 수	신고 금액	인원	금액
전 체	3,130 (16.6%)	20,077 (8.1%)	59.0 (△1.5%)	2,685	59.9
개인	2,385 (26.3%)	9,047 (21.2%)	9.4 (17.5%)	1,889	8.0
법인	745 (△6.4%)	11,030 (1.6%)	49.6 (△4.4%)	796	51.9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2. 신고인원 증가 및 신고금액 감소 이유

- (신고인원 증가 이유) '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인하* (10억 원→5억 원)되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 20년부터는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 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5~10억 원 구간 신고자 수 '20년 28%, '21년 21% 증가

- 또한, 제도 홍보에 따라 신고자의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금융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 활용) 적중률이 높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 그 외,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전년대비 6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금액 감소 이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저금리*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고금액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 미국 기준금리 1.75%(’20년 1~2월)에서 0.25%으로 감소(’20년 3~12월), 한국 0.5% 유지(자료출처: Fed, 한국은행)

** ’20년 발행규모는 3.5조 원으로 ’19년(15.1조 원) 대비 76.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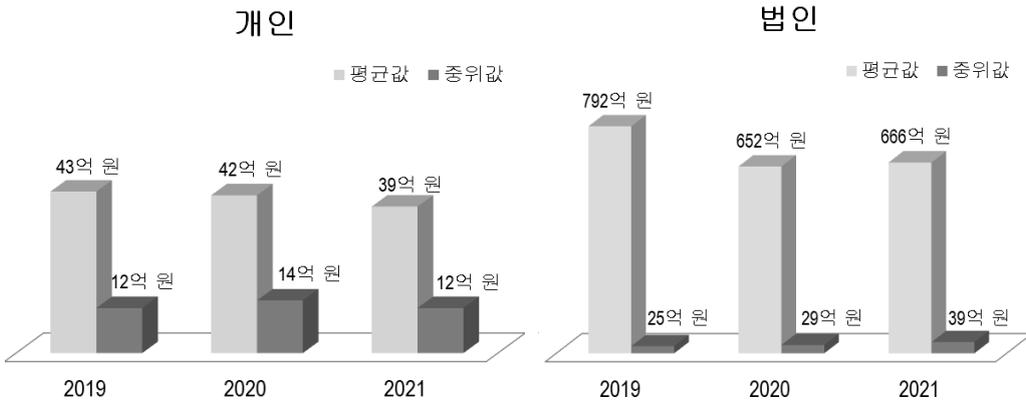
II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분석

1. 신고금액 평균치 및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 (평균·중위값) 최근 3년간 신고금액의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는데, 이는 고액 계좌잔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개인 상위1%(23명) 평균 1,572억 원, 상위10%(238명) 평균 266억 원
 법인 상위1%(7개) 평균 42,830억 원, 상위10%(74개) 평균 6,19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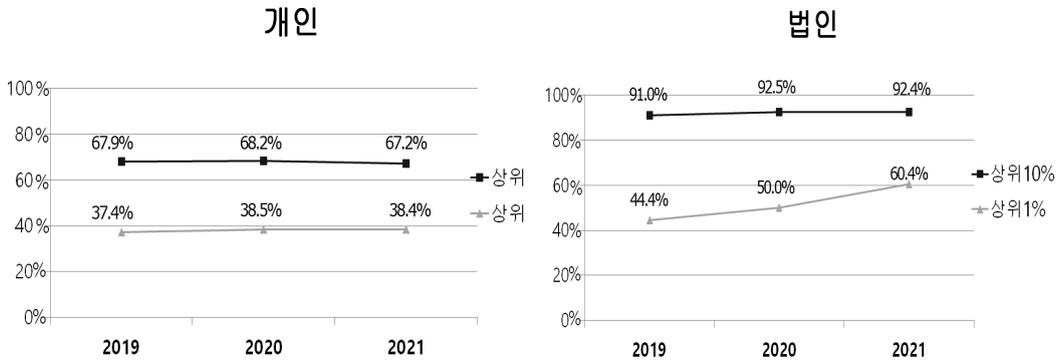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신고금액 평균·중위값 》



○ 개인과 법인 신고자의 전체 신고금액 대비 상위 1% 및 상위 10% 신고금액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개인·법인 상위 1%, 10% 신고금액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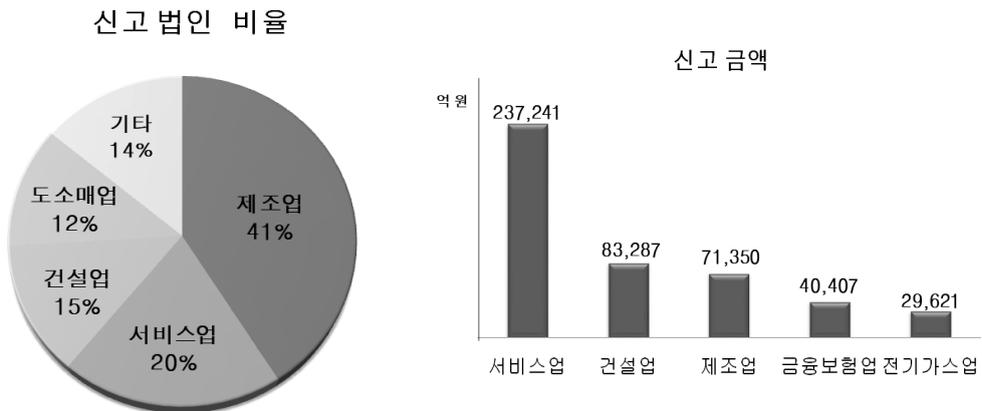


-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개인은 5~10억 원 구간에, 법인은 10~30억 원 구간에 각각 신고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2. 법인 업종별 신고현황

- 법인신고자의 업종별 신고 법인 수는 제조업(306개)이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 금액은 서비스업(23.7조 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의 업종별 신고법인과 신고금액 분포 》



3. 해외금융계좌 종류별 신고현황

- (올해 신고금액) 전체 59조 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6조 원(50.0%)으로 가장 많고,
 - 이어서 예·적금계좌가 22.6조 원(38.2%),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9조 원(1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1년 개인과 법인의 계좌 종류별 신고금액 》

(억 원)

구분 \ 계좌종류	합 계	예·적금	주식	파생상품	기타
개인	94,190	47,083	29,071	1,515	16,521
법인	496,158	177,435	266,596	8,142	43,985

- (신고추세) 예·적금계좌 잔액은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급감(전년대비 23% ↓)하여 5년간('17~'21년) 감소세인 반면, 주식계좌 잔액은 꾸준히 증가(전년대비 18% ↑)하였는데,
 - 이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및 주식 평가액 상승**등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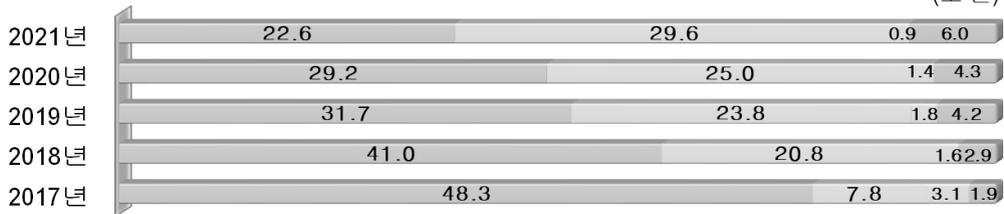
* 전년대비 통화공급량(M2): 미국 25%증가, 한국 10%증가(한국은행)

** 전년대비 S&P지수 16% 상승, 니케이지수 16% 상승 등 (S&P, 니케이)

《 최근 5년간 계좌 종류별 신고금액 》

■ 예·적금 ■ 주식 ■ 파생상품 ■ 기타

(조 원)



4. 국가별 신고현황

- (계좌개설 국가 수) 올해 신고된 총 20,077개 계좌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좌개설국가 수가 전년(144개)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계좌별 신고현황)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액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계좌 신고액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본 계좌 신고액은 주식계좌(95.7%)가 대부분이며,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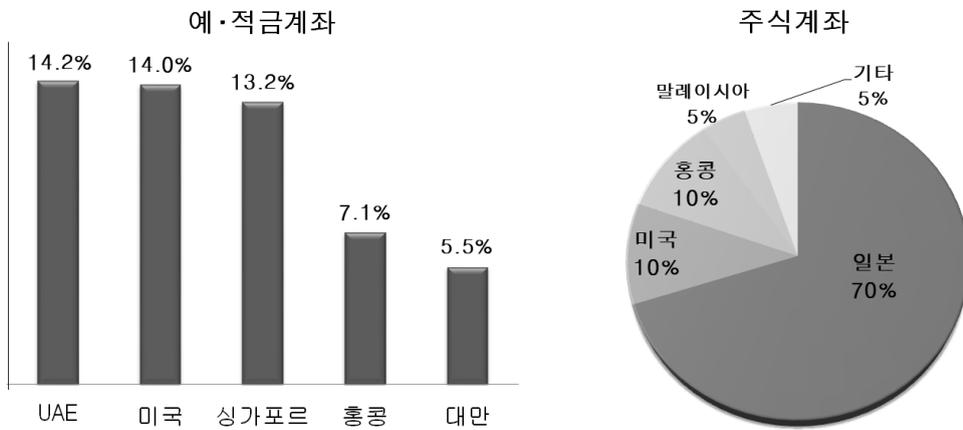
주식계좌 신고액 중에서 70%를 차지하였습니다.

《 국가별 주요 계좌 신고금액 및 비중 》

(조 원)

계좌 종류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UAE
전체 신고액	21.7	8.5	5.0	3.2	3.2
예·적금 (비중)	0.7 (0.3%)	3.2 (37.1%)	1.6 (31.9%)	3.0 (91.3%)	3.2 (100%)
주식 (비중)	20.7 (95.7%)	3.0 (35.8%)	3.0 (59.4%)	- (0.01%)	- (0%)

《 주요 계좌별 국가 신고 분포 》



- (개인 신고현황) 올해에도 개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와 신고 금액은 미국*(4,413개, 3.9조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 개인 신고 계좌 수의 49%(신고금액의 42%)가 미국에 개설
 - 홍콩, 싱가포르의 신고 계좌 수와 금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사실상 금융비밀주의가 해체되면서 역외세원이 양성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 전년대비 신고계좌 수(금액) 증가율: 홍콩 17%(30%), 싱가포르 41%(82%)
- (법인 신고현황) 법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는 중국(1,608개)이, 신고 금액은 일본(20.2조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미국과 싱가포르의 신고금액은 높은 증가율(각각 23%↑, 56%↑)을 보이며 전체 신고국 중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 * 미국 4위('20년) → 2위('21년), 싱가포르 8위('20년) → 5위('21년)
 - 반면 중국의 신고금액은 지난해 일본 다음으로 많았으나, 올해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감소로 신고 잔액이 대폭 감소*(84%↓)하였습니다.
 - * '20년 7.6조 원(신고국가 중 2위), '21년 1.2조 원(신고국가 중 10위)

5. 각 지방청별 신고현황

- 개인신고자의 신고금액 기준 전체 상위 7개 세무서와 지방청별 1위 세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신고금액 상위 7개 세무서》

(억 원, %)

구분 \ 세무서	서울청	서울청	서울청	중부청	서울청	서울청	서울청
	용산	삼성	반포	분당	강남	동대문	성북
신고금액	13,850	7,944	7,489	7,160	6,818	5,521	4,466
신고금액비율*	14.7	8.5	8.0	7.6	7.3	5.9	4.8

* 개인 신고금액(9.4조 원)대비 해당 세무서 개인 신고금액

《개인 신고금액 지방청별 1위 세무서》

(억 원, %)

구분 \ 세무서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용산	분당	고양	동청주	북청주	수성	제주
신고금액	13,850	7,160	735	464	46	229	1,943
신고금액비율*	19.2	50.9	34.3	33.4	22.6	31	52.1

* 각 지방청별 개인 신고금액 대비 해당 세무서 개인 신고금액

III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혐의 검증

1. 그 간 미신고자 제재현황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 공개 등 법적 제재수단을 집행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대하여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명, 억 원)

구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6.
인원	493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61
부과액	1,855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380

- (형사고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



과가 가능하며(병과 기능),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고발하였습니다.

- (명단공개)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명단공개 현황》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상
형사고발	68	-	-	1	7	18	12	11	14	5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연소자 역외탈세 혐의 검증

- 앞으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이 외 해외부동산 정보, 해외 법인현황, 국외소득자료 등을 개별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 를 새롭게 구축하여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 특히,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는데,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하여 올해 처음으로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나아가 역외음성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소득세·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 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미(과소) 신고 과태료 이외 미(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입니다.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 편법증여 및 국외 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의 양성화라는 제도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검증에 집행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IV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 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그러나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V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국가간 정보공조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를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역외세원의 양성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기준금액 및 신고방법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 * '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 원, '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 원 기준
- 신고의무자
 - (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신고대상 자산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됨.
- *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에 개설한 계좌*는 '22년 1월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에 포함

●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및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
 - * '21. 2. 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구 분	연도별 변경 내용
미신고 과태료	· '11년 3~9%, '12~15년 4~10%, '16년 이후 10~20%
명단공개 도입	· '13년: 50억 원 초과자 명단공개 시행
형사처벌	· '14년: 50억 원 초과자 형사처벌 시행
도입·강화	· '19년: 벌금 하한(13%) 신설(20% 이하에서 13%~20%)
미소명 과태료	· '15년 10%, '16년 20%, '20년 법인까지 소명의무 도입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국조법 §62①)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 '21. 2. 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미신고 또는 계좌정보의 일부가 확인되는 등의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 부과	
○ (미·거짓소명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	

붙임 2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 의 의미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벌금액)	부과 기준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액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누리집*,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 가능
 -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붙임 3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주요 적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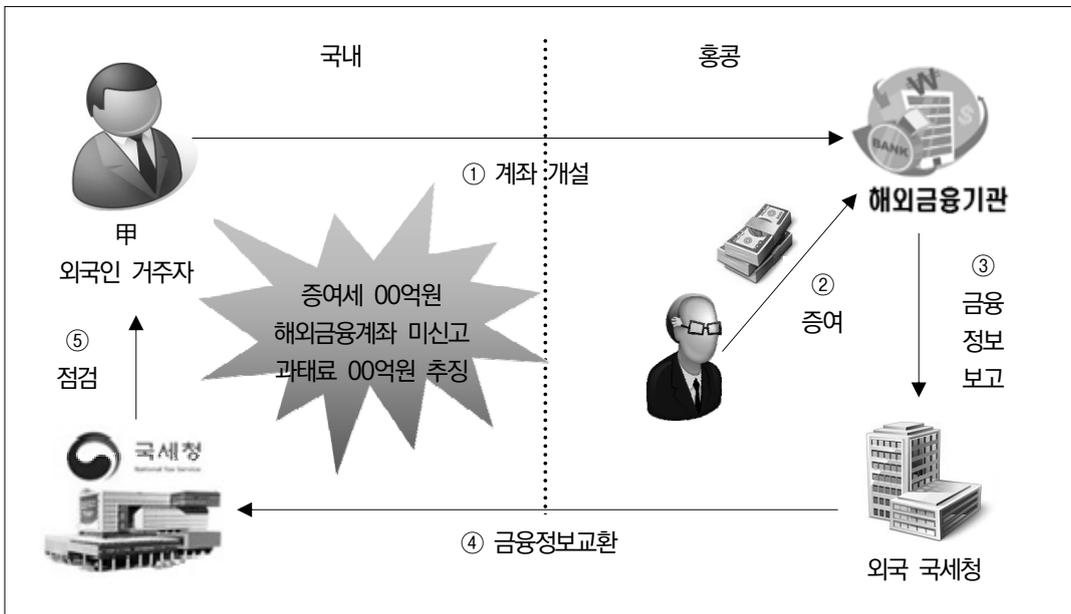
사례 1 외국국적 한국 거주자 甲은 父로부터 홍콩 계좌로 예금을 증여받았으나 해외금융계좌, 증여세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 ○

○ 주소지 : ○ ○ 시

◆ 주요 적발상황



- 중국 국적인 한국 거주자 甲은 홍콩 소재 금융회사에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상당의 예금을 홍콩 은행 계좌에 보관
- 홍콩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甲의 '18년 해외계좌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
- 甲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거주자인 것과 해외금융계좌의 자금 원천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확인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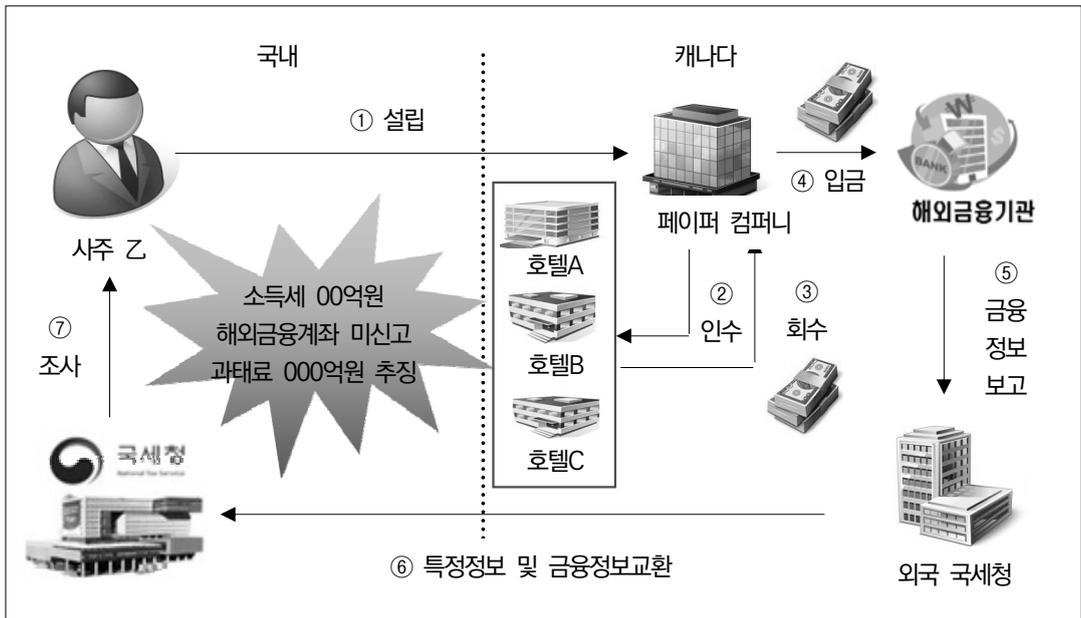
- 甲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및 증여세 00억 원 추징

사례 2 국내기업의 사주 乙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얻은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
- 소재지: ○ ○ 시
- 업 종: 숙박/호텔

◆ 주요 적발상황



- 사주 乙이 캐나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캐나다 소재 호텔 3곳을 000억 원에 인수한 사실을 포착하여 조사 실시
- 캐나다, 싱가포르, 벨리즈 세이셸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캐나다 페이퍼 컴퍼니와 호텔이 사주 乙의 소유라는 사실과
 - 사주 乙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00억 원을 확인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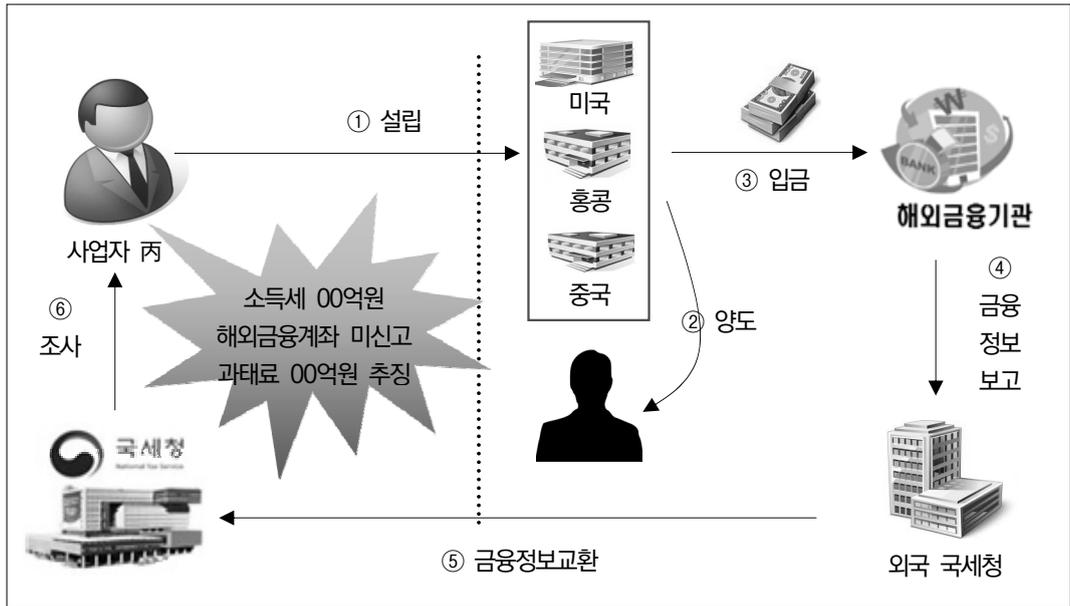
- 사주 乙에게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0억 원 및 소득세 00억 원 추징

사례 3 **사업자 丙은 해외주식 양도 대금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 ○
- 주소지 : ○ ○ 시

◆ 주요 적발상황



- 국내 개인사업자 丙은 미국, 중국, 홍콩에서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을 축적하였으나, 비거주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해외주식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실시
- 국내 경제활동, 의료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자 丙이 우리나라 거주자임을 입증
- 미국 등 외국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와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보하여 해외금융계좌 잔액 000억 원과 미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 00억 원을 확인

◆ 조치사항

- 丙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및 소득세 00억 원 추정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형사고발 조치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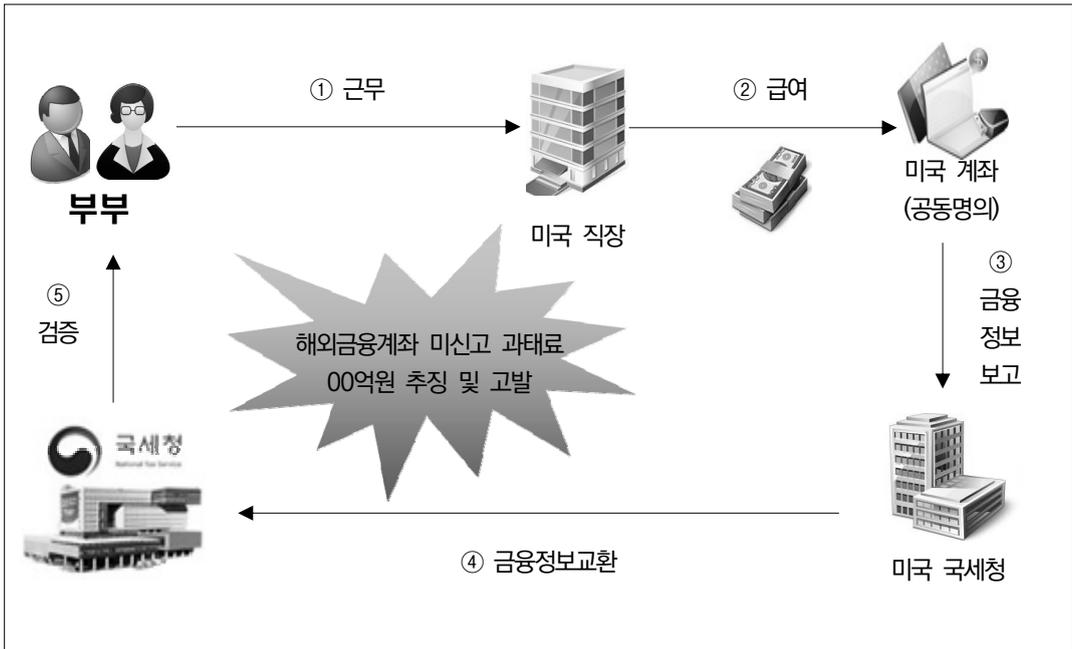
수년간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 국내 거주자인 부부가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소재 금융기관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급여 수령
- 부부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국내 보유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과 외환거래 자료에 착안하여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 요청
- 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계좌 자료를 근거로 납세자를 설득하여 부과제척 기간 내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 확인

◆ 조치사항

- 부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형사고발 조치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1. 10

- (추진 배경) 국세청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불공정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왔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총 74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유형은
 - (신종 호황업종) ①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②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자료수집]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해외 과세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하여 신종 탈루혐의 분석

- (불공정 탈세) ③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명), ④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

[자료분석]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 전문직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고액 재산가 총 재산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부동산은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츄츄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추징하겠습니다.

I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정세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부동산 관련 편법 탈세 및 불공정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종세원에 대한 대응 노력 및 불공정 탈세 대응 현황]

- ① (신종세원 대응) '21.9월 국세행정포럼(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 및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논의)
 - ② (불공정 탈세 대응) 부동산 편법거래, 기업이익 독식 등 불공정 탈세, 코로나19 상황 속 반사적 호황업종과 민생침해 탈세에 엄정 대응
- 그러나,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 *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경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전세계 매출의 30% (60조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세계경제포럼, Annual Report 2019-2020)
 -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재산 형성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 전문직 시장규모(VAT 매출) 성장세 : '16년 22.4조 원 → '17년 24.2조 원 → '18년 25.9조 원 → '19년 27.8조 원 → '20년 30.3조 원(국세통계연보)
- 이와 같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는 공정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공직경력 전문직·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검증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II 조사 착수 현황

-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 방역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표〉 착수 유형별 인원

구분	착수 유형	인원
신종 호황 업종	[유형 1] 인플루언서(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 이용)	16명
	[유형 2] 숙박공유 사업자(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17명
불공정 탈세	[유형 3]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직	28명
	[유형 4] 탈루소득으로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합 계		74명

-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하여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하여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 *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숙박공유 사업자 명단, 지급액 등 자료 확보
 -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 * 외국환거래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급결제대행社의 외환 지급, 수령 등 자료 수집
 -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형 1]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 16명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 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타 사업을 영위함

⇒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뒷광고'(대가관계 미표시 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함 또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함

- *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 **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

[유형 2]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 사업자 : 17명

-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함으로써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방역·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숙박업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하여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함

⇒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됨

[유형 3] 공직경력 전문직 등 : 28명

-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입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개요)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 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위주로 검증하였으며,
*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20년) : 법인 14.4억 원, 개인 2.6억 원 전문직 사업자 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선정함
* 전문직 유형별 시장규모(20년) : 변호사(6.9조), 세무사(5.6조), 회계사(4.4조), 변리사(1.1조)

⇒ (주요 탈루혐의)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하여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또한, 고액의 자문 수입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확인됨

[유형 4] 고액 재산가 : 13명

- 특수관계법인과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지금을 유출하여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다수의 고가 회원권·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탈루혐의) 아파트, 주택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하여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가 융합된 고액 재산가의 탈루 사례 등이 확인됨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

III 지난 추진성과

-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IV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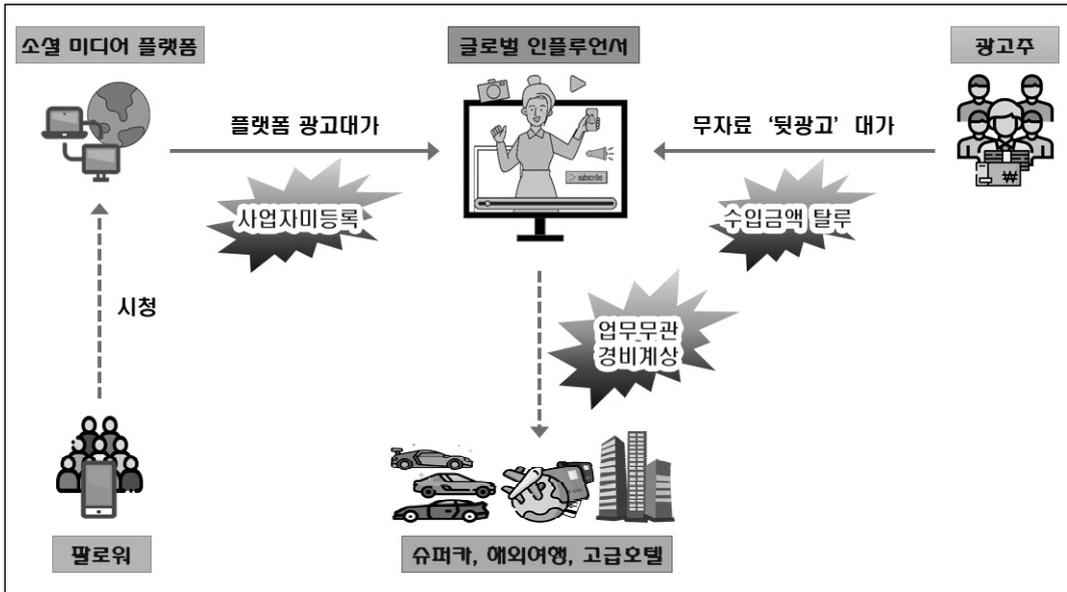
-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며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징하겠습니다.

붙임 1 - 이번 착수 사례(6개)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사례 1

* 과세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뒷광고’ 등 광고소득을 은닉하고,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부당 계상



● 주요 탈루 혐의

- ○○○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함
-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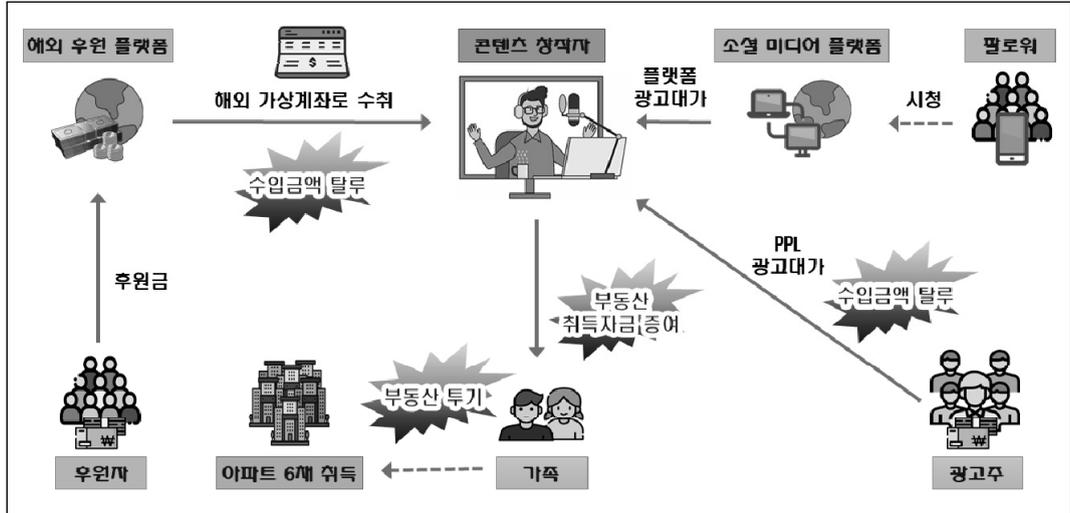
● 조사 방향

⇨ 광고소득 은닉, 과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업무무관 경비 계상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가상계좌를 통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

사례 2

* 해외 후원 플랫폼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하고 간접광고(PPL) 소득을 누락하여,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 주요 탈루 혐의

- ○○○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 *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 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전액 신고누락하고,
 - *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함
- ○○○은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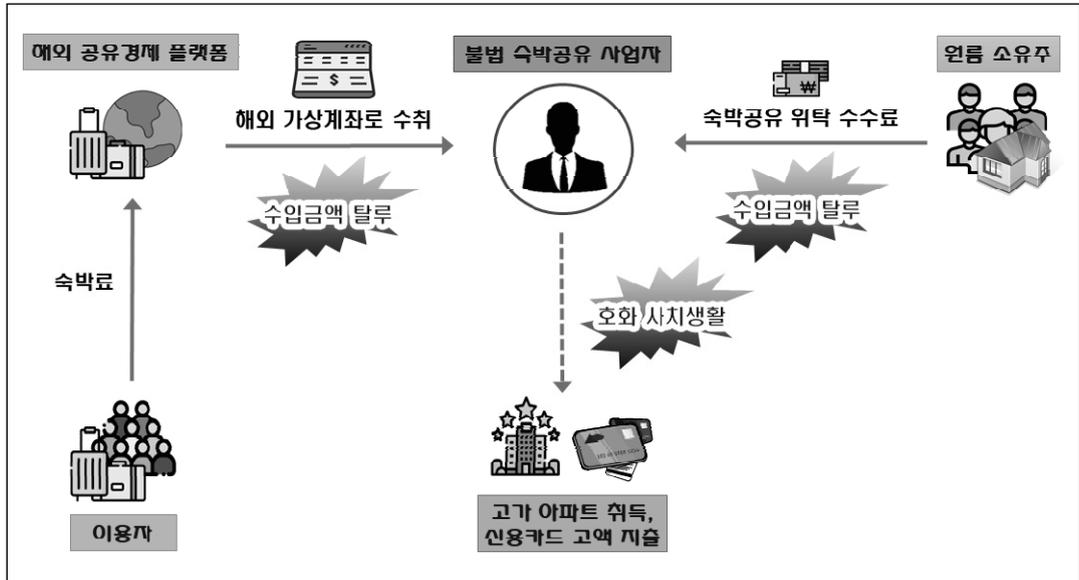
● 조사 방향

⇨ 후원·광고소득 은닉,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 사업자

사례 3

*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 및 숙박공유위탁업 소득을 탈루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신용카드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 주요 탈루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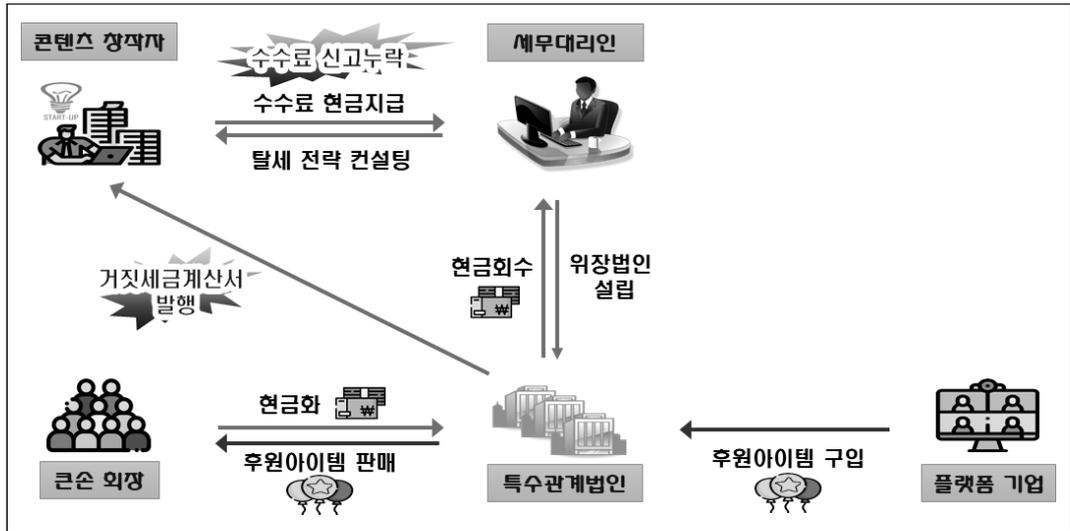
- ○○○은 기업형으로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社의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함
 - 또한,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空室) 정보를 활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소득을 탈루함
- ○○○은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 조사 방향

⇨ 숙박공유 및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 은닉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 4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절세전략을 홍보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며 적극적으로 탈세를 부추긴 회계사

*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입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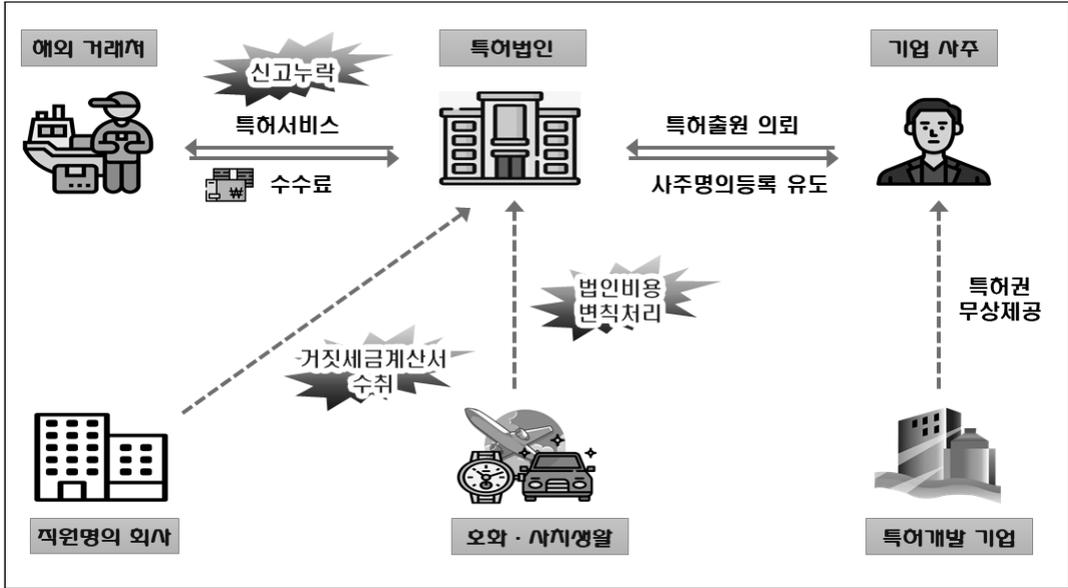
- ○○○은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로,
 - 고객의 세무자문 수입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들이 허위 경비를 계상하도록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력
- 이를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로 10여 개의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하여 수십억 원어치의 후원아이템을 구입 후
 - 일명 『큰손 회장』(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 창작자에게 거액의 후원 아이템을 선물하는 팬클럽 ‘회장님’) 등 수요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법인자금 유출

● 조사 방향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수입료 수입금액 누락 여부 등 엄정 조사

사례 5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하여 일감을 독식하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특허법인

* 정규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직원 명의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 ○○○은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특허법인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독식하며 매출이 증가하자
 -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
 - 외국법인·비거주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대표자 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해외여행·고가 승용차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또한,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하여 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적극적으로 조력
- 조사 방향
 - ⇨ 수입금액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 금융감독원, 2021. 10

◆ (개요)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 혐의심사 등 착수경위 : ① 회사의 회계오류 수정, ②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민원·제보, ③ 감독·검사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반혐의 발견,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

◆ 혐의 심사·감리 실적 (대상기간: '16년 ~ '21.6월)

- ① (실적) 총 229사에 대하여 혐의 심사·감리 실시 (상장 168사, 비상장 61사)
- ② (지적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 (229사 중 208사 지적)
< 착수경위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지적율 >

(단위 : 사, %)

	오류수정	감독·검사 중 인지	심사·감리 중 인지	민원·제보	기획심사 등	타기관	계
종결회사	115	42	32	19	12	9	229
지적율	87.0	97.6	90.6	94.7	91.7	100	90.8

- ③ (위법동기)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 민원·제보에 의한 혐의 심사·감리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높고(72.2%), 오류수정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낮은 편(9.0%)
- ④ (위반유형) 당기손익·자기자본 왜곡이 있는 중요위반은 지적회사의 82.7% 수준
- ⑤ (조치현황)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사를 조치하고,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 (과징금 부과금액 총 358억원)

◆ (향후 운영방향) ①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② 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며, ③ 단순과실 회계오류 회사는 신속하게 경조치로 종결할 예정

I 개 요

- 외감법상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는 '표본' 및 '혐의'로 구분
 - ① (표본)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전반* 또는 중점점검 이슈**에 대해 심사 등 실시
 - * ① 분식위험 분석 등을 통한 선정, ② 심사·감리 후 경과기간 고려 무작위 추출 등
 - **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회계이슈 점검대상회사 선정
 - ② (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여 심사 등 실시
 - ※ 혐의심사 등 착수경위
 - ①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오류수정, ②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 ③ 감독·검사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④ 감리 등의 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⑤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

⇒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II 혐의 심사·감리 실적 (대상기간 : '16년~'21.6월)

1 실시현황

- 최근 5년간 총 229사에 대하여 혐의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상장회사는 168사*이고 비상장회사는 61사
 - * 심사·감리 선정 당시 기준 (이후 상장폐지된 경우에도 상장회사로 분류)
- (연도별) 新 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하였고,
 - * 오류수정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17년) 6사 → (18년) 17사 → (19년) 34사 → (20년) 38사
 - '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
< 연도별 혐의심사·감리 실적 >

(단위 : 사)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종결 회사수	41	18	29	61	57	23	229
상장회사	22	14	23	50	44	15	168
비상장회사	19	4	6	11	13	8	61

- (착수경위)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 (115사), 감독·검사 업무 중 인지 18.4% (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 (32사), 민원·제보 접수 8.3% (19사) 順

〈 혐의심사·감리 착수경위('16년~'21년 6월) 〉

(단위 : 사, %)

실적 \ 착수경위	오류수정	감독·검사중 인지	심사·감리 중 인지	민원·제보	기획심사 등	타기관	계
종결회사수	115	42	32	19	12	9	229
비 중	50.2	18.4	14.0	8.3	5.2	3.9	100

2 지적률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 (229사 중 208사를 지적)

〈 혐의심사·감리 결과 연도별 지적현황 〉

(단위 : %, 사)

지적률 \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지적률	90.2	83.3	93.1	82.0(주)	98.2	100	90.8
종결 회사	41	18	29	61	57	23	229
지적 회사	37	15	27	50	56	23	208

주) '19년은 완화된 조치양정기준 적용(연결특례 적용 등)으로 무혐의 종결 건이 증가

-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임
 - 재무제표 수정회사의 경우 수정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아 지적률이 87% 수준

〈 착수경위별 지적률('16년~'21년 6월) 〉

(단위 : %, 사)

지적률 \ 착수경위	오류 수정	감독·검사 업무 중 인지	심사·감리 중 인지	민원·신고	기획심사 등	타기관	계
지적률	87.0	97.6	90.6	94.7	91.7	100	90.8
종결 회사	115	42	32	19	12	9	229
지적 회사	100	41	29	18	11	9	208

3 위반내역 분석

가. 위법동기

-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 '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짐

〈 혐의심사·감리 결과 지적회사의 위반동기 〉

(단위 : 사, %)

연도 위반동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고 의	9	4	6	6	11	8	44 (21.1)
중 과 실	17	10	11	12	3	6	59
비 중	45.9	66.7	40.7	24.0	5.4	26.9	(28.4)
과 실	11	1	10	32	42	9	105
비 중	29.7	6.7	37.0	64.0	75.0	39.1	(50.5)
계	37	15	27	50	56	23	208

-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은 편임

* 제약·바이오 회사의 개발비 관련 위반에 대한 계도조치에 기인

〈 혐의심사·감리 실시경위별 지적회사의 위반동기('16년~'21년 6월) 〉

(단위 : 사)

	고의	중과실	과실	계
오류수정	9	25	66	100
감독·검사업무	9	17	15	41
심사·감리 중	5	10	14	29
민원·제보	13	3	2	18
기획 심사·감리	3	-	8	11
타기관 통보	5	4	-	9
계	44	59	105	208

나. 위반유형

-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하 'A유형 위반')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
 -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위반동기별 A유형 비중('16년~'21년 6월) >

(단위 : 사, %)

위반 동기	위반 회사수	A유형 위반	
		회사수	비중
고 의	44	43	97.7
중과실	59	51	86.4
과실	105	78	74.3
계	208	172	82.7

-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
 - A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
 -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 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順
 - ※ 기타유형 : 유동·비유동 부채 분류 오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자산 사용제한·차입약정 등 주식 누락

4 조치 현황

-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 202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
 - * (非조치 6사) 他조치회사와 흡수합병,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
 - ** (감사인 非조치 74사) 재무제표 심사 후 종결, 분·반기보고서 위반 또는 위반회사가 외국법인 등
 -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56사
 - * 심사·감리 선정 당시 기준
 < 혐의 심사·감리 결과 연도별 회사·감사인 조치현황 >

(단위 : 사)

실 적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지적 회사수	37	15	27	50	56	
조치 회사수		34	14	27	48 (10*)	56 (33*)	23 (6*)	202 (49)
조치 감사인		34	14	21	32	19	14	134

* 재무제표 심사 결과 경조치 종결 회사수

- (회사) 63사에 대해 총 33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13사에 대해 총 4.4억원의 과태

료를 부과

-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으며,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회사 포함

- (감사인·공인회계사)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

-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2억원 부과

III 시사점 및 향후 제도 운영방향

1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 지속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 → 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의 경우 감리 가능)

-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회계부정 신고사항에 대한 감리 실시로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가 증가*

* 민원·제보 관련 지적한 회사 중 고의 지적비율은 72.2%

→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

2 타기관·타부서와의 정보공유 강화

- 검찰 등 타기관 및 감독기관 내의 감독·검사부서에서 통보한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적률*이 높고

* (지적률) 타기관 통보 100%, 감독·검사업무 과정 중 발견 혐의 97.6%

-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적발 기여도*가 높은 편임

* 타기관 통보의 경우 100%, 감독·검사업무 중 발견의 경우 63.4%를 고의·중과실 위



반으로 조치

→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

3 단순과실에 기인한 오류 수정회사에 대해 신속한 경조치 종결

● 최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영향으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수정 등 회계오류 수정회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수정회사와 관련한 심사·감리 실적도 증가*

* ('17년) 6사 → ('18년) 17사 → ('19년) 34사 → ('20년) 38사

●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의 경우, 과실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비중이 높음 편임 (지적회사의 66% 수준)

→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

* 경영진의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 후 엄정하게 조치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2일 (금)	10월 25일 (월)	10월 26일 (화)	10월 27일 (수)	10월 28일 (목)
미 달 러 (USD)	1175.80	1178.40	1171.80	1166.30	1168.10
일 본 엔 (JPY)	1031.72	1037.92	1030.38	1021.41	1026.63
영 국 파 운 드 (GBP)	1621.72	1621.66	1612.40	1605.24	1604.68
캐 나 다 달 러 (CAD)	950.53	952.59	946.22	941.10	945.22
홍 콩 달 러 (HKD)	151.23	151.60	150.73	149.99	150.18
위 안 화 (CNH)	184.04	184.34	183.28	182.66	183.22
유 로 화 (EUR)	1366.75	1372.07	1360.17	1352.27	1355.05
호 주 달 러 (AUD)	877.68	879.97	877.27	875.07	877.36
싱 가 폴 달 러 (SGD)	872.55	874.09	869.45	865.56	866.1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2.78	283.95	282.26	281.27	281.17